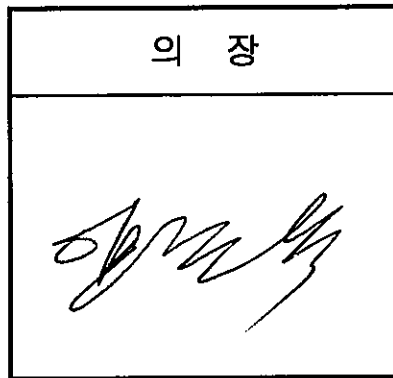


의원발의 의안 접수 및 회부



No.104

2018. 3.

서울특별시의회
(의사담당관)

의원 발의 의안접수 및 회부

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 따라 의안이 접수되었기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함.

접수의안

연 번 (의안번호)	의 안 명	주 요 내 용	발의·제출 (소관위원회)	비 고 (발의일)
1 (2456)	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마을버스 적정 요금 범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산출근거가 필요한 바, <u>시장이 관련 조합 및 사업자 등에게 운송비용 등의 산출기초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</u> - 시장은 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금의 범위를 정하고자 할 때 운송비용 등 그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또는 운송사업자 등 으로부터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(안 제9조제3항) - 시장은 마을버스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서비스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4항)	신원철 의원 (찬성10명) (교통)	2018. 3.26.
2 (2458)	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복지 및 학대방지 조례안	<input type="checkbox"/>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<u>반려동물의 복지 및 학대방지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시장의 실천적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.</u> - 복지대상반려동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(제2조) - 반려동물복지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(제4조), 시민과 소유자 의무를 규정(제5조, 제6조) - 반려동물복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반려동물 통계의 작성과 관련한 사항 규정(제6조, 제7조) 등	권미경 의원 외 1명 (찬성10명) (보건복지)	2018. 3.28.

향후계획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(상임위원회 회부)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안 회부

붙임 : 관련 의안 각 1부. 끝